#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73 발의연월일: 2025. 4. 21.

발 의 자:윤준병ㆍ허성무ㆍ정동영

송옥주 • 박홍배 • 문대림

박희승 • 허종식 • 김태선

허 영·안도걸·서영교

백선희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 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'0'으로 만드는 탄 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
우리나라는 지난 2021. 5. 21.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 및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통과되었고,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·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

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·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7호의2, 제36조 의3,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9975호)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9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·결산 등 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 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

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6조의3(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.
  - ③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

제60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제36조의3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

## 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 의3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60조제1항제9호의 기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예산서 및 2026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방재정제도의 연구・개	제4조(지방재정제도의 연구・개
발 등) 행정안전부장관은 이	발 등)
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	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·개	
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의2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
	결산 등 지방재정의 온실가스
	<u> 감축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</u>
	<u>안</u>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36조의3(온실가스감축인지 예
	산서의 작성·제출) ① 지방자
	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온실가
	스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
	석한 보고서(이하 "온실가스감
	축인지 예산서"라 한다)를 작
	<u>성하여야 한다.</u>
	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에
	따른 예산안에는 온실가스감축
	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
	<u>다.</u>
	③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

제44조의2(예산안의 첨부서류) ① 저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 다만,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<신 설>

8. ~ 14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 시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 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하여야 한다.

1. ~ 9. (생 략) <신 설>

10. ~ 16. (생략)

② ~ ⑧ (생 략)

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
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<u>다.</u>
제44조의2(예산안의 첨부서류) ①
1. ~ 7. (현행과 같음)
7의2.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
8. ~ 1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60조(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
시 등) ①
<u>.</u>
1. ~ 9. (현행과 같음)
9의2. 제36조의3에 따른 온실가
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「지방
회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
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
10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